

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2조제5호
 - 불필요한 용어(초기대응담당자) 삭제
- 조례안 제2조 및 제8조
 - 개정법령에 따른 용어 수정(지정 ⇒ 임명)
 - 현장지휘관의 통합지휘소 상근여부에 대한 권한을 군수인 본부장으로 수정
- 조례안 제18조
 - 응급의료 활동 지원 대상을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와 일치하도록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정”을 “임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정하고자”를 “임명하고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의 장은”을 “평창군 대책본부장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”을 “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,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”을 “명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,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"<u>초기대응담당자</u>"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 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7조(현장지휘관 지정)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<u>지정</u>할 수 있다.</p> <p>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<u>지정하고자</u>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제7조(현장지휘관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임명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u>임명하고</u> <u>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계획 통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통합지휘소의 장은</u>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·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계획 통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평창군 대책본부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 자	안전건설과 장 근 용
연 락 처	(033)330-2406

관계 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~ ④ 생략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제18조(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,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응급의료종사자,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.